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2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9.

발 의 자 : 박성훈 · 김은혜 · 박정하
임이자 · 조지연 · 엄태영
서천호 · 김정재 · 김대식
이소희 · 신성범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인공지능(AI), 로봇, 자율주행,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·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. 특히 인공지능 기반 생육·병해충 예측, 농작업 로봇, 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농업 현장에 활용되면서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을 “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”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변화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. 또한 스마트 농업 기자재와 소프트웨어의 제조사·서비스별 기술규격 및 데이터 형식 등이 서로 달라 장비 간 연계와 교체·확장이 어렵고 특정 기술이나 사업자에 대한 종속 및 농업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

우려가 있음.

이에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·로봇·자율주행·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,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·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).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”을 “인공지능·로봇·자율주행·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”을 “기자재·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스마트농업”이란 농업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생산성·품질 향상과 경영비·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<u>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</u> 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인 <u>공지능·로봇·자율주행·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</u> -----.
2. (생 략) 제12조(표준화 사업의 추진) ①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<u>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</u>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2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표준화 사업의 추진) ① ----- ----- ----- <u>기자재·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